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22. ~ 5. 1.)예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보관증의 징구등”을 “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물수품란 제6호 중 “문화재류”를 “국가유산 종류”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처분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과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바목, 별표 2 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성명 귀하(우. 주소)

제 목 압수물건환부통지서

1. 귀하로부터 압수하였던 위 목록의 물건을 돌려드리고자 하니 년 월 일
시까지 우리 청 ○○과(☎○○○-○○○○, 담당 : ○○○)로 오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에는 반드시 이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이 오실 때에는 귀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위임인이 날인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위임인이 서명한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압 제

증 제 번 호	물 건	수 량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만약 위 압수물건이 필요없거나,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날인하여 이 통지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 또는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신 명 의

○○○검사장 [인]

소유권포기서

위 목록에 기재된 압수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귀하(우. 주소)

제 목 압수금 환부통지

1. 우리 청에 보관 중인 압수금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부하고자하니 . . . 까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우리 청 ○○과로 출석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예금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를 원하실 때에는 아래 무통장입금청구서 기재란에 해당 내용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청구하신대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3.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위임인이 날인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위임인이 서명한 경우)**을 무통장입금청구서와 함께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셔야만 송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과 압수담당 ○○○(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압제번호	증제번호	금액	성명	환부사유

○○검찰청 ○○지청장 [인]

----- 자르는 선 -----

년 압제 호(증 호)

- 무통장입금청구서 -

예 금 주 성 명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금 액

본인에 대한 환부압수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인)

연락처(- -)

○○검찰청 ○○지청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특수압수물”이란 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u>문화재</u> 및 <u>고가예술품</u> 사.·아. (생 략) 4의2. ~ 6. (생 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국가유산</u> ----- 사.·아. (현행과 같음) 4의2. ~ 6. (현행과 같음)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형 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에 보 관위탁의 뜻을 기재한 후 검사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보관증의 징구등</u> 에 관하여는 제 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제71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 -- ----- ----- ----- ----- ----- -----. <u>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u> --- ----- -----. ② (현행과 같음)